

철도업무종사자에 대한 불합격 기준 일부

□ 철도안전법시행규칙 (제12조 제2항 및 제40조 제4항 관련)

○ 검사항목 “눈”에 대한 불합격 기준

- 1) 두 눈의 나안(裸眼)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5 이하인 자(다만, 한쪽 눈의 시력이 0.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3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)로서 두 눈의 교정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8 이하인 자(다만,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.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.5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)
- 2) 시야의 협착이 1/3 이상인 자
- 3)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, 활동성,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,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
- 4)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
- 5) 색각이상자(색약 및 색맹)